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마포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(안)심사보고서

‘96. 12. 12.
도시건설위원회

1. 심사결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‘96. 11. 23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‘96. 11. 23.

다. 상정일자 : 제42회 임시회 제6차위원회 (‘96. 12. 12)상정, 질의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조병현 하수과장)

가. 제안이유

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고 동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, 우리구 수방단 운영, 임무, 조직 등 기타 관련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○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(‘96. 6. 7.)으로 개정됨에 따라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 사항을 규정하고, 수방단의 임무(재해사전대비, 재해발생지역 예찰주민대피, 재해응급대책, 방재의 날 행사 참여등)를 보완하였음.(안 제3조)

○ 수방단의 조직중 수방단원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임명토록 하고 수방단원이 될 수 없는 자를 명시하였음(안 제4조)

○ 수방단의 단장은 단원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토록 하고, 단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수방단 업무를 총괄하고, 수방단을 대표하도록 함.(안 제5조)

○ 수방단의 편성은 본부 경계반 10명 내외, 복구반 30명 내외, 구호반 10명 내외로 구성토록 정함(안 제6조)

3. 전문위원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박관수)

○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‘95. 12. 6.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개정

공포되고, 동법 부칙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‘96. 6. 7.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개정조례안을 개정된 법령에 적합하도록 동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려는 것임.

○ 안 제4조에 보면 수방단원에 대한 조직기준은 규정되어 있으나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인 수방단 최저인원에 대한 구성원 범위가 규정되지 않아 조례내용상 구성원수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외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질의요지(유용봉 위원) : 조례안 제6조의 편성을 보면 최저인원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?

○ 답변요지(하수과장 조병현) : 1개 수방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함 단원 15인 이상 50인 이내로 구성함.

○ 질의요지(유용봉 위원) : 수방단원의 예우 차원에서 식대등 부수적인 경비에 대한 예산지원 계획은?

○ 답변요지(하수과장 조병현) : 자연자조 차원의 지역 봉사를 한다는 취지에서 예산은 없으나 재해대책 시행령 제14조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등 지원대책이 일부 있음.

○ 질의요지(박상수 위원) : 재해발생시 엄청난 인원이 동원되는데 공상 또는 사망시에 대한 보험등 제도적 장치는 있는가?

○ 답변요지(하수과장 조병현) : 법령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후 보고 하겠음.

5. 수정안 요지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‘96. 12. 12. 김유현 위원외 1인

나. 수정 이유

- 조례안중 구성원수에 대한 규정 신설코자 함.

다. 수정안 주요골자

- 안 제4조에 “1개 수방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한 단원 15인 이상 50인 이내로 구성한다”라는 조항을 신설

- 6. 심사결과 : 수정안 가결
- 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- 8. 기타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마포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(안)에 대한수정(안)

제안년월일 : 1996. 12. 12.

제안자 : 도시건설위원장

1. 수정이유

○ 서울특별시마포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(안) 제4조에 수방단원에 대한 조직기준은 규정되어 있으나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인 수방단 최저인원에 대한 구성원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구성원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.

2. 주요수정골자

○ 안 제4조제1항에 “1개 수방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한 단원 15인 이상 50인 이내로 구성한다”라는 규정을 신설함.

서울특별시마포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(안)에 대한수정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(안)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1개 수방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한 단원 15인 이상 50인 이내로 구성한다.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

수 정 안 대 비 표

원 안	수 정 안
<p>안제4조(조직) ① 수방단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임명한다.</p> <p>1.~3 (생략)</p> <p>② 제1항 제1호의 주민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방단원이 될 수 없다.</p> <p>1.~4 (생략)</p>	<p>안제4조(조직) ① 1개 수방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한 단원 15인 이상 50인 이내로 구성한다.</p> <p>② (원안 제1항과 같음)</p> <p>1.~3 (원안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음)</p> <p>③ (원안 제2항과 같음)</p> <p>1.~4 (원안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와 같음)</p>

서울특별시마포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13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6. 11.
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고 동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, 우리구 수방단 운영, 임무, 조직 등 기타 관련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가.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('96. 6. 7)으로 개정됨에 따라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 수방단의 임무를(재해사전대비, 재해발생지역예찰주민대피, 재해응급대책, 방재의날 행사 참여등) 보완하였음.(안 제3조)

나. 수방단원의 조직중 수방단원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임명토록하고 수방단원이 될 수 없는 자를 명시하였음.(안 제4조)

다. 수방단의 단장은 단원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토록 하고, 단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수방단 업무를 총괄하고, 수방단을 대표하도록 함.(안 제5조)

라. 수방단의 편성은 본부 및 경계반 10명 내외, 복구반 30명 내외, 구호반 10명 내외로 구성토록 정함.(안 제6조)

3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(1995. 12. 29 법률 제5069) 제15조

- 자연재해대책법(1996. 8. 8 법률 제5153) 제12조등

4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 : 별도 필요없음

별첨 : 서울특별시마포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마포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(안)
서울특별시마포구수방단운영 조례를 다음과

같이 개정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마포구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)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관할 구역내의 재해위험 우려가 있는 지역(이하 "재해위험지구"라 한다)에 동 또는 통 단위로 수방단을 설치한다. 다만, 동 또는 통 규모에 따라 2개 이상의 수방단을 설치하거나 인근 2개 이상의 동 또는 통을 합하여 1개의 수방단을 설치할 수 있다.

제3조(임무) 수방단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
1. 법 제22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재해사전대비 점검·정비
2.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대피 유도
3. 법 제23조제3항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(이하 "령"이라 한다) 제25조에 의한 방재의 날 행사참여
4. 법 제36조제1항의 재해응급대책
5. 기타 방재상 필요한 사항

제4조(조직) ① 수방단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임명한다.

1.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
2. 방재와 관련있는 기관 및 업체의 소속직원
3. 기타 구청장이 방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② 제1항제1호의 주민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방단원이 될 수 없다.

1. 17세 미만자 및 60세 이상인 자
2. 고교생 및 대학생
3. 경찰관 및 군인
4. 기타 활동이 불가능한 자

제5조(단장) ① 단장은 단원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.

② 단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수방단 업무를 총괄하며 수방단을 대표한다.

제6조(편성) 수방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편성된 각반별 인원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1. 본부 및 경계반 : 10명 내외
 - 가. 주민대피 유도
 - 나. 재해유관기관과의 연락유지
 - 다. 주민의 질서유지 및 통제
 - 라. 재해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경계
 - 마. 기타 다른반에 속하지 않는 업무
2. 복구반 : 30명 내외
 - 가.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·정비
 - 나. 피해시설물의 긴급복구
 - 다. 각종 장비 및 자재의 동원
 - 라. 재해지구의 정리·정돈
3. 구호반 : 10명 내외
 - 가. 이재민에 대한 급식조달 및 사후처리
 - 나. 사망자·부상자등 인명피해자 조치
 - 다. 재해발생지역의 방역 실시
 - 라. 담요등 구호물자 조달

제7조(소집해제 및 기록보존) ① 구청장은 영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방단을 소집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의한 소집결과는 별지서식에 의거 3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.

제8조(기타 필요한 사항) 수방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

마포구수방단 편성 및 소집현황

편 성 현 황			소 집 상 황						비 고	
일련 번호	직책	성명	주민등록번호	일시()		일시()		일시()		
			주 소	소집 사유	시간	소집 사유	시간	소집 사유		시간